

# AIBD 2003 방콕선언문의 개정내용 검토 및 시사점

■ 김 성 웅\*

아태지역의 유일한 방송분야 정부간 국제기구인 AIBD에서는 최근 미디어 환경 및 ICT 기술의 변화, 각국의 정치·사회·경제적 변모에 따라 2003년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기존 2003 방콕선언문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동 선언문은 세계화속의 미디어의 의무, 문화다양성 증진, 공영방송의 역할, 정보격차 해소, 인적자원 개발, 미디어의 책임, 환경과 재난, 소셜미디어, 여성의 권한 신장, 분쟁국가의 미디어 등 10개 분야에서 사업자와 정부당국 등이 장려해야할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본고는 미디어 주요 이슈를 담고 있는 2003 방콕선언문+10의 개정 배경 및 경과, 기존 선언문과 구별되는 수정 및 추가 권고사항 등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송분야의 국제기구 논의전략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 목 차

- I. 서 론 / 21
- II. 2003 방콕선언문+10 개요 / 23
  - 1. 개정 배경 및 진행경과 / 23
  - 2. 2003 방콕선언문+10의 기본구조 / 25
- III. 2003 방콕선언문+10의 개정내용의 주요 특징 / 26
  - 1. 기존 선언문에서의 수정사항 / 27
  - 2. 개정 선언문의 추가 권고사항 / 37
- IV. 결론: 정책적 시사점 / 46

## I. 서 론

2013년 5월 29~31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MCIT) 주최로 아시아미디어서밋(Asia Media Summit, 이하 AMS)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방송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하에 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02)570-4436, woongnice@kisdi.re.kr

디어 윤리, 다양성, 미디어 해독력, 콘텐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세부이슈를 논의하였다. AMS는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The Asia-Pacific Institute for Broadcasting Development, 이하 AIBD)<sup>1)</sup>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체로 2004년 출범한 국제회의이며,<sup>2)</sup> 미디어 세계화, 문화다양성, 공영방송, 정보격차, 인적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국가간, 방송사업자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인 2003년 방콕선언문(Bangkok Declaration 2003, 이하 기존 선언문)<sup>3)</sup>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sup>4)</sup>

이후 AMS는 2004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회를 진행하였으며, 다뤄진 주제 및 의제들은 주로 지역, 종교, 문화의 갈등 해결, 역내 평화와 번영, 미디어의 의무, 책임, 역할, 영향력 등 방송 관련 아태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이었다. 이에 2012년 AMS를 주최하기로 한 태국은 2003 방콕선언문 채택시의 회의 주최국으로서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선언문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회원국 및 협력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을 완료하였다.

본 고에서는 2003 방콕선언문의 배경 및 개정을 위한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선언문의 내용과 개정선언문의 내용을 비교·분석해 본다. 또한 선언문의 권고사항에 규정된 세부사항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정책 동향 및 법규 체제를 검토, 점검해본다. 이를 토대로 아태지역 방송분야의 국제협력 및 우리나라의 의제선도에

- 1) AIBD는 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소속 국가들의 미디어·전기통신 발전을 지원하는 지역내 정부간 조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회원국의 방송문화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연구개발을 위해 1977년 유네스코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로는 방송통신위원회(舊 방송위원회는 2006년 가입)가 2008년부터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참가하고 있음. AIBD 홈페이지. 이강규(2009), p.4.
- 2) 아태지역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정상급 국제방송회의로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동, 북미지역에서 매년 5~60여개국 4~600여명의 정부정책결정자, 영향력 있는 언론사 대표 및 유력 인사들이 참가하여 정보교환과 방송외교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강규(2009), p.15.
- 3) 2003년 채택된 기존 선언문은 ‘2003 방콕선언문’, 2012년 개정된 선언문은 ‘2003 방콕선언문 +10’으로 명명.
- 4) 방콕선언문은 200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통신/방송에 관한 1차 장관회의에서 승인된 문건으로, 아태지역 공영방송사들이 직면한 문제 및 경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긴밀한 협력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권고안을 채택한 첫 번째 시도. AIBD 홈페이지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2003 방콕선언문+10 개요

### 1. 개정 배경 및 진행경과

라디오와 TV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대중매체였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다양한 다중전달(multi-delivery),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미디어 환경에 등장함에 따라 라디오와 TV를 위협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 라디오 및 TV의 일부는 시청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추구해 왔으며, 공영방송 또한 그들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중의 관심과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가고 있다. 세계화 현상, 디지털 격차 확대, 사회적 불평등 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태국이 주최하고 AIBD가 주관하였으며, ITU, UNESCO, UN 및 프랑스정부 등이 후원한 제1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The 1st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n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sup>5)</sup>가 2003년 5월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디지털 격차, 공영방송, 인력 개발을 아우르는 다섯 가지 핵심 권고안을 규명한 2003 방콕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후 방콕선언문의 주요한 결과물로서 AMS가 시작되었고, 이후 10차례의 AMS가 진행되었다. 2003 방콕선언문 이후 진행된 AMS의 주요 의제들을 살펴보면, 선언문의 권고사항 뿐만 아니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당시 수요가 있는 현안들이 포함되었다. AIBD와 회원국들은 이러한 배경하에 AMS를 개최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방송분야의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방콕선언문의 내용을 개정할 필

5) 2003년 정보사회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위한 주제별 논의 및 지역내 사전회의의 성격을 가짐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AMS 주요내용

회차	장소	주제	세션 주요 의제
제10차 (13. 5월)	인도네시아 마나도	방송의 미래 전망(Delivering on Broadcasting's Future)	- 지속가능한 발전 - 소셜미디어 및 콘텐츠 - 미디어 윤리, 다양성
제9차 (12. 5월)	태국 방콕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 영향력 창출 (Creating Impact: Media in Today's Society)	- 방콕선언문 개정 - 공영방송의 개선 - 미디어 신뢰, 해독력 증진
제8차 (11. 5월)	베트남 하노이	디지털미디어의 확산: 방송의 역할 재정립(Digital Media Everywhere: Repositioning Broadcasting)	- 콘텐츠 활용 및 창출의 혁신 - 방송기술 혁신 - 뉴미디어 최적화
7차 (10. 5월)	중국 북경	창의, 신뢰, 권리, 책임(Creativity, Credibility, Rights & Responsibilities)	- 미디어 윤리, 창조성 - 공영방송 규제
6차 (09. 5월)	중국 마카오	미디어 역량 구축(Media & Capacity building)	- 뉴미디어와 세계 질서 변화 - 글로벌 위기에의 미디어 대응 - 미디어 교육
5차 (08.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새로운 비전(New Vision)	- 신규매체 등장과 대응 - 신규매체 비즈니스 모델 - UGC 등
4차 (07.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재림(再臨), 재고, 재충전 및 혁신 (Revisiting, Rethinking, Replenishing, Renovating)	- 참여하는 미디어 시대 - 드라마/리얼리티쇼: 새로운 포맷 - 방송의 새로운 물결 등
3차 (06.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역과 문화간의 대화 조정(Mediating Dialogue between Continents and Cultures)	- 언론의 독립과 책임 - 세계 시청자를 위한 로컬콘텐츠 개발 - 미디어 통신 융합 등
2차 (05. 5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평화와 번영 증진(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In a Globalised World)	- 국제화와 문화적 도전 - 표현의 자유 v. 미디어 소유권 - 평화 저널리즘 등
1차 (04.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미디어와 이슬람 - 글로벌화/문화다양성/뉴스어젠다 - 문명의 대화 등

자료: 이강규(2009), AIBD 홈페이지 재정리

이에 9년 후 AIBD와 핵심 파트너들은 2012년 1월 13일 태국 공영방송(Thai PBS)이 주최한 2012 AMS를 위한 운영그룹(Steering Committee) 회의에서 이 선언문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동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선언문의 틀 안에 세부내용을 잘 녹여 들게 하고, 디지털 시대 미디어 발전의 현재와 미래 방향 모색에 있어 선언문의 유용성 및 관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현 미디어 환경에 대한 방콕선언문의 본질 및 가치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구하여 취합된 의견을 선언문 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아태지역 방송 사업자들과 핵심 파트너들은 2003 방콕 선언문이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회원국 의견을 반영한 추가 권고안을 통합하여 ‘2003 방콕선언문+10’(Bangkok Declaration 2003+10, 이하 개정선언문)을 탄생시켰다. 수정된 선언문에는 미디어의 책임 시스템, 소셜 미디어, 기후 변화와 재난, 여성에게서 권한 이양, 분쟁 국가 및 체제 전환 중인 국가에서의 미디어 등의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총 10개의 핵심 권고안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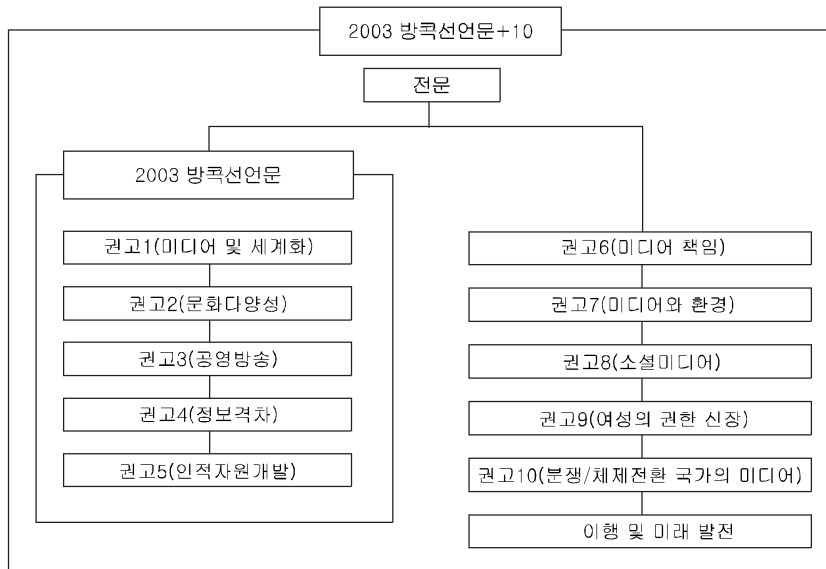
2003 방콕선언문+10은 2012년 5월 29~30일에 걸쳐 열린 9차 AMS에서 AIBD 회원국들과 파트너들에게 발표되었으며, 세션 논의 후 제안된 많은 의견 및 수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최종 수정본이 2012.7월 AIBD 연차총회에서 제출, 승인되었다. 승인 이후에는 AIBD의 다양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2. 2003 방콕선언문+10의 기본구조

2003 방콕선언문은 전문과 5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세계화, 문화적 정체성 및 다양성, 공영방송, 디지털시대 정보격차 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본문은 미디어 및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공영방송, 정보격차, 인적자원 개발 등 5개 분야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술한 권고사항 등 방송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훈련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AIBD에게 부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2012년 개정 완료한 2003 방콕선언문+10은 2003 방콕선언문의 전문 및 5개 권고 사항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일부 내용에 수정을 가하고, 여기에 추가로 5개 권고 사항 및 이행과 발전이라는 동의사항을 합쳐 완성하였다.

[그림 1] 방콕선언문 2003+10의 구조



자료: AIBD(2003) (2012) 재구성

### Ⅲ. 2003 방콕선언문+10의 개정내용의 주요 특징

개정본인 2003년 방콕선언문+10의 개정내용은 기존 선언문의 권고사항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 및 추가 권고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5개 권고사항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대신 수정 또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5개 권고 분야에서 포괄할 수 없는 분야는 새로 5개 권고사항을 추가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와같이 구분하여 개정내용의 특징을 분석해보았고, 우리나라 국내정책 상황 및 선언문과의 정합성을 살펴보았다.

## 1. 기존 선언문에서의 수정사항

### (1) 전문

본문의 앞 부분에 있는 전문은 선언문에서 담고있는 권고사항의 목적을 확인하고 권고사항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개정 선언문의 전문에서는 기존 선언문의 전문 내용을 대부분 담으면서 추가된 권고사항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기존 내용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기존 선언문의 전문은 세계화의 우려와 긍정적 요인, 문화 다양성 증진, 공영방송의 의무, 디지털시대의 정보격차 인식 등을 순서대로 기술한 반면, 수정 선언문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및 시민 저널리즘을 통한 상호연결성 증대의 측면도 고려하였고,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격차, 문화 균질화 등의 우려와 함께 연결성 개선, 생산성 증가,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 삶의 질 고양, 정보의 생산 및 확산, 시장자유화 등 세계화가 제공해준 다양한 기회에 대한 내용도 더욱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한편, 개정 선언문에 새롭게 추가된 권고사항인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환경변화와 미디어의 역할, 소외계층의 역할 및 개선, 소셜미디어 등에 대해서도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개정선언문에 추가된 전문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 a. 자유롭고 책임감 있으며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은 투명성의 제고, 법치, 시민의 사회 참여 등 민주적 삶의 방식에 있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미디어가 언론의 자유를 보호 및 증진할 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책임 또한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 b. 세계화는 보다 나은 연결성, 생산성 증가, 자유로운 기술의 이동, 삶의 질 고양, 정보의 생산과 확산, 시장자유화에 있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지만, 한편으로 경제적 격차와 국제적인 문화 균질화의 우려 또한 증식시켰음을 주지한다.
- e.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디지털 격차 현상을 초래하는 한편 방송통신 융합과 상호 연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는 파편화된 시청자들이 점차 소셜 미디어나 시민 저널리즘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혀간

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

## (2) 권고 1 - 미디어와 세계화

권고 1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미디어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대중과의 소통 및 상호이해 증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로컬콘텐츠 창출 등 기존의 권고사항에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콘텐츠의 도덕성 및 윤리성 보장을 위해 행동 규칙을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다.

1.4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콘텐츠의 도덕성 및 윤리성 보장을 위해 행동 규칙을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방송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다양성 증진,<sup>6)</sup> 로컬 콘텐츠 창출 등을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다.<sup>7)</sup> 또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 및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8)</sup>

## (3) 권고 2 - 문화적 다양성

권고 2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개정선언문에서 수정된 부분이 없이 기존 선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의 재화와 달리 문화적 작품 및 시청각 작품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일반원칙하에 적용 및 관리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언문은 글로벌 획일화, 표준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적, 윤리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포함하는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모든 관련 주체, 정부, 시민사회, 공영 및 민영방송은 다양한 문화간의 상호 대화 촉진을 위해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관련당국으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 증진 목적의 공영 및 민영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려

6) 미디어의 다양성은 소유 다양성(방송법 2장), 콘텐츠 다양성(방송법 6조, 11조, 5장), 시청자 점유의 다양성(방송법 35조의84, 69조의2) 등으로 나뉜다. 방송통신위원회(2009), pp.38~45

7) 방송법 1조, 4조, 6조1항, 6조6항, 35조의4, 42조의2

8) 미래창조과학부(2013)



하는 규제 메커니즘 개발; 방송사, 예술가 및 제작자들로 하여금 로컬 콘텐츠를 담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을 장려하는 기금 마련; 저작권 보유자 및 예술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저작물의 저작권이 공정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UNESCO를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국제규범을 개발하는 적절한 국제기구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다.<sup>9)</sup>

우리나라는 계층, 종교, 인종 등을 포함하는 방송의 다양성 및 국제친선의 증진을 법제화하여 준수하고 있으며,<sup>10)</sup> 또한 기금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sup>11)</sup> 국가간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sup>12)</sup>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및 중소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sup>13)</sup>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증진을 장려하고 있다. 저작권의 공정한 보호<sup>14)</sup>도 보장하고 있으며, 지역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다.<sup>15)</sup>

#### (4) 권고 3 - 공영방송

권고사항 3에서는 공영방송의 장려사항으로 재정적 자율성, 편집의 독립성 강화와 보호, 건전한 오락물 및 정보에의 접근과 보급,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소셜미디어의 활용,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의 무제한적 접근 제공 등을 추가하였다.

- d. 편집의 독립성 및 관리, 재정적 자율성 강화와 보호를 위한 활동 수행
- f. 정보 및 건전한 엔터테인먼트에의 접근 및 보급, 시민 참여의 확대를 위한 신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활용
- h.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정보통신에의 자유롭고 무제한적인 접근 제공

9) UNESCO는 UN산하기구로서 AIBD의 AMS에 매년 참여하여 문화, 환경, 개발 등의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10) 방송법 69조, 78조의2, 6조

11) 방송통신위원회(2013)

12) 방송법 97조, 42조의2

13) 미래창조과학부(2013)

14) 방송법 70조의2

15) 방송통신위원회(2011)

기존 선언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의무로 대중의 교육 개발, 신뢰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창출, 고질의 콘텐츠 창출, 미디어 폭력의 문제 해결,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을 규정하였다. 정부당국의 의무로 공영방송의 재정 및 행정 자율 보장, 공영방송의 의무 정기 검토, 정책결정시 공영방송의 정책결정의 독립성 및 편집독립성 보장 범위 마련, 공영서비스 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시간 할당 등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방송의 자유를 법규로 보장하고 있고, 전기요금에 방송수신료를 함께 부가하여 공영방송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sup>16)</sup> 또한 공영방송의 허가 및 재허가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 공영방송의 의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sup>17)</sup> 한편, 서민, 소외 계층을 위한 방송접근권 제고뿐만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방통융합 서비스를 접근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sup>18)</sup>

#### (5) 권고 4 - 정보격차

권고사항 4는 디지털시대 전환에 따른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배경을 반영하여 관련당국의 정책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추가 권고내용을 담았다.

- a. 공동체 멀티미디어 센터 설립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있어,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인터넷 연결성에 있어, 잠재적 ‘보유층’과 ‘비보유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 b. 정보 및 인프라에의 보편적이고 가능한 접근 제공을 위해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방송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 c. 각국의 이익을 위해 TV의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파생되는 ‘디지털 디비던드(dividend)’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배분하고,

16) 방송법 1조, 56조

17) 방송법 10조, 17조, 46조

18) 방송통신위원회(2013), 미래창조과학부(2013)

- e. 사회 전체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는 교육을 모든 계층에 대해 장려하고,
- g. 인터넷 상에서 전세계 언어의 사용을 촉진한다.

한편, 기존 선언문에 기술되었던 것중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수정하였다. ‘TV 및 라디오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 확산’은 정부당국의 권고에서 방송사업자의 권고로 이동하였다. 정부 차원의 TV 보급 확대는 이미 큰 의미가 없어졌고, 개도국 상황을 고려하여 후술하는 사업자의 권고사항으로 남겨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잠재적인 빈부 격차 해소’라는 문구를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인터넷 연결성과 얻어진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잠재적 보유층과 비보유층 간의 격차 해소’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하였다.<sup>19)</sup> ‘정보 및 인프라에의 보편적이고 가능한 접근 제공’의 문구에 더해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방송의 지속적 개선’에 노력할 것을 추가 보완하였다. 이는 모바일 보급 등을 통해 정보격차가 많이 줄었으나, 브로드밴드로 확대하지 않으면 정보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추세에 맞춰 디지털 디비던드의 계획 수립 내용을 추가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계획하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sup>20)</sup>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디지털TV 관련 보조 및 무상제공 등의 저소득층 지원,<sup>21)</sup> ‘모바일광개토플랜’을 통해 디지털 잉여주파수 대역의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였다.<sup>22)</sup> 다만, 디지털 전환 이후 잉여주파수 대역의 실질적 활용에 대해서는 방송 및 통신업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정부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다.<sup>23)</sup>

19) ‘보유층과 비보유층간 격차’는 아태지역의 정보 격차가 접근 가능 여부가 핵심인 초기 도약기에서 사용보유가 중요한 도약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이원태 외(2011), pp.30~32.

20) 국가정보화 기본법(2013)

21) 지상파TV디지털전환 특별법 10조, 방송통신위원회(2011), 방송통신위원회(2012b)

22) 108MHz폭 중 40MHz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 방송통신위원회(2012a)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장애인 방송서비스 확대, 수신기 보급 확대 등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sup>24)</sup> 그리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할 예정이다.<sup>25)</sup>

한편, 정부의 정책노력 권고사항과 균형을 맞춰 방송사에 대한 장려사항을 별도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TV, 라디오 보급 확대를 통한 정보 및 교육 증진, 정치사회경제 및 재정적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디지털 이행계획 수립과 이행 경험의 국제적 공유,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지원 등을 방송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권고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 a. TV 및 라디오 커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정보 및 교육의 확산을 증진하고,
- b. 사회경제적, 정치적,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원칙, 목표, 표준과 적용을 고려하는 한편,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일정 및 수용 가능한 책임이 규정되는 디지털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 c. 사회적, 효율적인 이익을 위해 디지털 이행의 경험을 타국과 공유 및 기회의 창출을 규명하고,
- d. 디지털이행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해 ITU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요청한다.

#### (6) 권고 5 - 인적자원 개발

상술한 모든 분야별 권고사항은 합리적인 주체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특히 개도국에게 있어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은 미디어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관점에서 5번째 권고사항에 인적자원 개발 분야를 포함시켰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5의 경우도 권고 2와 마찬가지로 수정사항 없이 기존 선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23) 디오데오, 2013. 3. 18일자

24) 방송통신위원회(2013)

25) 미래창조과학부(2013)

즉, 글로벌 사회를 창출하려는 최근의 노력에 발맞춰,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자층을 위한 보도의 독립성, 문화 및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보도의 영향력을 촉진하기 위해 저널리스트 및 기타인력의 기술을 정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관리, 리더십 등에 대해 멀티미디어 및 방송의 모든 분야 인력을 훈련하고; 평화 및 공정한 보도, 그리고 다른 문화 존중에 대한 높은 기준 및 약속을 담은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윤리규약을 개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권고사항의 국제적 논의와 관련하여 AIBD가 추진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세계적인 사건의 신뢰할만한 보도와 다원성 증진을 통해, 평화, 조화 및 선의를 장려하는 공영방송서비스 증진을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방송사와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주제에 대해 상호간에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 제공; 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및 관심분야의 확대에 맞춘 훈련 제공; 글로벌 환경의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목적 및 의무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장 제공 등을 명시하였다.<sup>26)</sup>

<표 2> 2003 방콕선언문 + 10의 핵심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전문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세계화의 기회와 우려, 세계화 속의 문화다양성 증진, 공영방송의 역할, 디지털시대의 정보격차 및 상호연결성 증대, 환경 변화와 미디어의 역할, 소외계층 개선과 미디어 및 ICT의 기여, 미디어 리더러시의 중요성	
권고 1 미디어 및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li> <li>- 대중과의 대화, 지식공유, 상호이해 및 관용</li> <li>-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로컬콘텐츠 창출</li> <li>- 소셜미디어 등 콘텐츠의 윤리성 보장 위한 행동규칙 도입 및 시행</li> </ul>	

26) AMS에서도 인력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AIBD의 역할을 중시, 강조하고 있고, AIBD 총회에서는 이를 주제로 회원국-주요 개도국-의 수요 및 공여국의 기여 계획을 파악, 논의하기도 하였다. AIBD 연차총회 결과보고서 2012.

구 분	주요 내용	
권고 2 문화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li> <li>- 문화다양성 증진 목적의 라디오/TV 프로그램 지원 및 장려</li> <li>- 로컬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장려 기금 마련</li> <li>- 저작권의 공정한 보호</li> </ul>
권고 3 공영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사 권고</li> <li>- 정보확산, 대중참여 등 교육개발, 증진</li> <li>- 신뢰성, 문화적다양성을 담은 프로그램 창출</li> <li>- 모든 계층을 위한 질 높은 콘텐츠 창출</li> <li>- 재정적 자율성, 편집의 독립성 강화, 보호</li> <li>- 미디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li> <li>- 정보 및 건전한 오락물 보급, 신기술 및 소셜미디어 활용</li> <li>- 해정행위 강력 대처 통한 콘텐츠 저작권 보호</li> <li>- 소외지역에 정보통신의 무제한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li> <li>- 공영방송의 재정, 행정, 콘텐츠 창출의 자율 허용</li> <li>- 공영방송 위한 재정 메커니즘 연구 및 고려(장비구매 요금, 면허수수료, 광고 수입 등)</li> <li>- 발전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li> <li>- 공영방송의 의무 정기 검토</li> <li>- 공영방송에 선호 주파수 할당, 정책결정의 독립성 부여, 완전한 편집독립성 부여</li> <li>- 공영방송 프로그램, 콘텐츠에 시간 할당 보장</li> </ul>
권고 4 정보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TV/라디오 보급 확대 통한 정보, 교육 확산</li> <li>- 정치사회, 재정상황 고려한 달성가능하고 수용가능한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li> <li>- 디지털 전환 경험 사례 타국과 공유 및 국제기구의 지원 수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li> <li>- 인터넷, ICT로 얻어진 정보 활용에 필요한 지식, 기술의 보유층과 비보유층 간 격차 해소</li> <li>- 브로드밴드 인프라 및 방송 지속 개선</li> <li>- 디지털 디비전드 계획 수립 및 배분</li> <li>- 경제적 약자, 빈곤층의 이익 보장</li> <li>- ICT 기술의 사용 촉진 교육 장려</li> <li>- 지식풍부 사회 창출 및 인터넷 상 언어 사용 촉진</li> </ul>
권고 5 인적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보도의 독립성,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도의 영향력 촉진 위해 방송인력의 기술 정기적 개선</li> <li>- 방송분야 인력 훈련</li> <li>- 독립적, 자발적인 윤리규약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BD 의무</li> <li>- 독립적, 공정한 글로벌 방송네트워크 구축/평화, 조화, 선의/다양성 증진</li> <li>- 사업자와 정책결정자간 정기적 논의 기회 제공</li> <li>- 신 기술 활용 등 훈련 제공</li> <li>- 공영방송의 목적 및 의무 변화 논의 기회 제공</li> </ul>

구 분	주요 내용	
<p>권고 6 미디어의 책임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리규정 도입, 언론인 지속 교육 및 훈련, 옴주즈맨 임명, 시청자 설문 등 피드백 메커니즘 확립</li> <li>- 담당자들의 역할, 책임, 목표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li> <li>- 담당자들의 책임 증진 위한 권고안 제공</li> <li>- 모범사례 공유</li> </ul> </li> </ul>	
<p>권고 7 미디어와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관련 사업자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 대응 위한 정책 도입</li> <li>- 기후변화의 영향 정보, 환경 개선방안 정보 확대</li> <li>- 뉴미디어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 대응방안 전달</li> <li>- 기후변화에 대한 관련 당사자 훈련</li> <li>- 기후변화 관련 담당자, 전문가, 편집자 등과 협력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대중 전파</li> <li>-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 활용하여 기후변화 메시지 단순화</li> <li>- 라디오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에 메시지 전달</li> <li>- 광고주들의 기후변화 캠페인 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관련,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의 언론인 훈련 재정지원을 위해 미디어 조직과 제휴</li> <li>- 이용자 친화적 방송, 기후변화 관련 기사 제작지원 위한 예산 할당</li> <li>- 개도국 지원하는 기부자 및 개발프로그램 파트너와 제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관련 사업자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련 방송 제공 지역 확대</li> <li>- 정보의 정확성, 시기적절성, 품질, 효과성 향상</li> <li>- 언론의 가치와 윤리지침 준수에 필요한 책임감 있는 언론활동</li> <li>- 재난 취재 언론인의 물리적 보장 및 안전 보장</li> <li>- 재난 관리 분야의 미디어 훈련 도입, 강화</li> <li>- 드라마, 코미디 등 인기 장르 프로그램 활용</li> <li>- 재난방지, 구호, 준비, 대응 개발 관련 민영 및 정부기관의 관심 요구</li> <li>- 재난구호의 체계적 담당 기관과의 협력, 제휴 증진</li> </ul> </li> </ul>	

구 분	주요 내용	
<p>권고 8 소셜미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이용자 콘텐츠 및 소셜미디어에 전문적 접근</li> <li>- 소셜미디어 관련 내부 규칙 도입</li> <li>- 반독점 캠페인, 재난방지 보도 등에 소셜 미디어 활용 및 이니셔티브 구축</li> <li>- 언론인의 보도 과정에 소셜미디어 활용 촉진</li> <li>- 대중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인식 제고</li> <li>- 틈새시장 프로그램 제작에 소셜미디어 활용</li> <li>- 훈련프로그램, 고급 프로그램 개발에 소셜미디어 사이트 활용</li> <li>- 허위정보, 공격성향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경계</li> </ul>	
<p>권고 9 여성의 권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미디어 종사자 훈련, 조직 및 방송프로그램내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 증진</li> <li>- 성차별, 폭력 감소 위한 모범사례 홍보</li> <li>- 여성의 인간 존엄성 제고 및 부정적 고정관념 근절 노력</li> <li>- 양성평등을 위한 행동규범, 업무지침, 자율규제 메커니즘 개발 및 실행</li> <li>- 여성에 영향을 주는 미디어와 ICT의 파급효과 연구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li> <li>- ICT 및 브로드밴드 기술 활용하여 성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및 여성 고용, 교육의 기회 창출</li> <li>- 여성의 브로드밴드 인프라 접속 및 서비스 이용 촉진 위한 사전조치</li> </ul>	
<p>권고 10 분쟁 및 체제 전환 진행 국가의 미디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 권고</li> <li>- 언론의 자유 등 저널리즘의 가치 옹호, 보호</li> <li>- 분쟁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신뢰, 균형, 신빙성 있는 정보의 보도 및 전파 보장</li> <li>- 취재기자의 직업윤리 준수 단련을 위한 훈련 제공</li> <li>- 분쟁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와 참여, 민주 정부와 국민간 소통의 수단, 평화적 플랫폼으로서, 미디어의 역할 강화</li> <li>- 언론인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자원 교환을 위한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li> <li>- 국제표준에 기반한 미디어 정책 도입</li> <li>- 대중의 뉴스 및 통신 접속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개발</li> <li>- 공영방송 서비스 개발</li> <li>- 안전한 조건에서 업무 수행할 미디어 권리, 평화, 민주주의 건설에 미디어의 기여 존중</li> </ul>	
<p>이행 및 미래 발전</p>	<p>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선언문 홍보, 권고안 이행시 모범사례 추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권고안 홍보 및 운용, 지속적인 토론 및 논의를 위한 세미나 등 개최, 관련성 보장을 위한 선언문 정기 검토</p>	

자료: AIBD(2003)(2012) 재정리



## 2. 개정 선언문의 추가 권고사항

### (1) 권고 - 6 미디어의 책임 시스템

권고 6에는 표현의 자유에 상응하는 미디어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미디어의 책임감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였다. 세부사항으로 방송사에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a. 효과적인 윤리 규정 도입,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옴부즈맨 임명, 정정보도, 시청자 설문조사, 시민의 피드백 매커니즘 등 책임시스템을 강화한다.
- b. 책임당사자들과 연관된 역할과 책임, 목표, 업무 기대치를 명확히 설정한다. 책임당사자들은 업무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해야 하며, 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또한 제공해야 한다.
- c. 책임시스템 형성 및 운영상의 모범사례를 부각시키고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방송사 특히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7)</sup> 또한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sup>28)</sup>

### (2) 권고 - 7 미디어와 환경

최근 일본 및 동남아 지역의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의 폐해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과 지각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 증시되고 있는 배경을 반영하여 환경을 위한 미디어 조항을 선언하였다. 동 권고사항은 각각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방송사업자 및 관련당국이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

미디어는 기후 변화가 생태계,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개인적, 집단적 대응 강화, 시청자들의 관심 제고, 국민의식 교육과 공공정책 수립

27) 방송법 44조

28) 방송법 32조

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언문은 기후변화와 관련, 방송사업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 a.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며,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 b.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정보 및 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향상시킬 방안에 대한 양적, 질적 정보를 증가시킨다.
- c.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은 뉴 미디어를 최대한 이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책을 전달한다.
- d. 기후변화에 대한 미디어 훈련을 통해 매니저, 편집자, 언론인, 기타 언론기관의 직원들이 이에 더욱 민감해지도록 한다.
- e. 과학자, 정책결정자,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로컬 편집자와 배우,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대중적 접근법을 활용하고 대중의 호감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관련 기사와 정보를 전파하도록 한다.
- f. 로컬 시청자의 혜택을 위해 드라마, 토크쇼, 스토리, 기타 미디어 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장르 및 토착언어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한 합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단순화한다.
- g. 라디오 방송을 폭넓게 활용하여 로컬 커뮤니티에 타겟화된 메시지가 폭넓게 전달되도록 한다.
- h. 기후변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후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주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 캠페인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관련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 a. 특히 개도국의 언론인 및 편집자들의 훈련을 재정적으로 공동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조직들과 제휴한다.
- b. 다큐멘터리, 공공서비스 보도나 인포머셜(상품정보 프로그램)과 같은 포맷을 통해 이용자 친화적이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사와 스토리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할당한다.

- c. 개도국의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후원자 및 개발프로그램 파트너들과 제휴한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재산과 환경을 파괴하고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초래하는 재난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AIBD와 회원국은 미디어가 대중 교육 및 재난 대처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장려하였다.

- a. 재난방지, 재난경감, 준비, 대응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재난관리 주파수에 많은 커버리지를 제공한다.
- b. 방송미디어가 전파하는 정보의 정확성, 시기적절성, 품질 및 비용대비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 c.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저널리즘 구현 및 재난 희생자 보도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증진한다.
- d. 재난상황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물리적, 정신적 준비 보장, 언론인의 안전 강화 뿐만 아니라, 사망 및 부상의 경우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 e. 재난 관리부문에서 미디어 훈련을 도입, 강화한다. 훈련의 범위에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취재, 트라우마 경험자 및 희생자 인터뷰, 희생자 관련 기사작성, 윤리적 이슈를 다룰 때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
- f. 광범위한 시청자층을 위해 기획된 드라마, 코미디와 같이 인기있는 장르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 g. 개인적,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히 소셜미디어와 같이 다양한 전달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실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재난방지, 재난경감, 준비, 대응과 관련하여 민관조직의 관심을 요구한다.
- h.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대중 인식과 실무적 제휴관계, 기타 이니셔티브를 강화하

는 데 있어, 재난경감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과의 협력과 제휴관계를 증진시킨다. 미디어, 재난경감 기관들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 규약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의무를 규정하고,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 공영방송인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해 놓았으며<sup>29)</sup> KBS는 자체적으로 재해·재난 보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등 전통매체 이외에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등 뉴미디어를 전달 매체로 활용한 재난방송은 낮은 수준이며, 특정지역을 위한 지역 재난방송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sup>30)</sup>

### (3) 권고 - 8 소셜 미디어

최근 소셜미디어 웹사이트들은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자 네트워킹, 피드백, 대중 참여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젊은 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플랫폼들이 확산됨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면서, 이들이 선택하는 메시지가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라디오 및 TV 방송이 여전히 지배적인 미디어로 남아있지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은 기술 및 다양한 전송 플랫폼과 보조를 맞추고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간의 시너지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과 수요를 고려하여 8번째 권고사항에 소셜미디어를 포함시켜 방송사들이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하고 있다.

29)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30) 최재웅(2012), pp.36~37.

- a. 이용자 콘텐츠 및 소셜 미디어에 전문적으로 접근한다.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방송사업자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목적을 다양화하여 시청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 b. 브랜드 정체성과 보도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위한 내부 규율을 고안, 도입한다. 이러한 규율은 상식과 기존의 보도 기준에 기반할 수 있다.
- c. 반독점 캠페인, 재난방지 및 구호활동을 보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및 기타 관련 이니셔티브를 구축한다.
- d. 보도, 협업을 통한 스토리 제작이나 정보출처의 접근, 해당 방송사의 브랜드에 관련되는 시청자들의 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에 필수적인 피드백 생산에 있어, 언론인들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도록 촉진한다.
- e. 뉴미디어 시대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소셜미디어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 f.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틈새시장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 g. 직무상 네트워킹과 경력 개발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고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활용한다.
- h. 직업적, 윤리적 규범의 보장을 위해, 미확인된 루머나 허위 정보, 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을 경계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언론계에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언론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sup>31)</sup>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법제 정비는 아직 미비하다. 통합방송법에 소셜미디어 규제 등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산관학계의 입장 차이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sup>32)</sup>

31) 기자협회보, 2013. 3. 7일자.

32) PD저널, 2013. 5. 9일자.

#### (4) 권고 - 9 여성의 권익 신장

미디어와 ICT는 성별에 따른 불평등과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 및 차별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미디어와 ICT 이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여성들의 권한이 신장되어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여성을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a. 미디어 전문가들의 훈련을 위한 할당을 포함하여, 조직 및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성적평등에 대한 시각을 개선시킨다.
- b.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및 여성에 대한 부정적 묘사와 착취 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미디어 및 ICT 형태로 성공스토리와 모범사례를 홍보한다.
- c.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묘사하고, (여성에 대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한다.
- d.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성과 여성의 균형잡힌 성묘사를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 규범과 업무지침, 기타 자율적 규제메커니즘을 개발, 실행한다.
- e. 특히, 모든 여성들의 정보 요구와 관심사를 포함하여,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와 ICT의 전면적인 파급력에 대한 연구를 지원한다.

관련 당국에는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a. 정치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뿐만 아니라, 성적 평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조직활동을 위해, 그리고 여성의 고용, 교육, 건강을 위한 기회 창출과 성적 평등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ICT 및 브로드밴드 기술을 활용한다.
- b. 여성들의 브로드밴드 인프라에 대한 접속과 브로드밴드로 가능한 서비스 이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실현에 불리한 계층의 이익 반영 의무를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다.<sup>33)</sup>

#### (5) 권고 - 10 분쟁 및 체제 전환 중인 국가에서의 미디어

체제전환을 겪는 국가뿐 아니라, 분쟁지역 및 전후 재건 상황에 있는 국가에서 뉴스와 미디어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건설에 필수적인 뉴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잘못된 정보와 적개심 유발을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 뉴스 및 미디어의 근본적인 의무는 진실 보도이기 때문에, 납치, 부상, 사망을 포함하여 많은 언론인들이 이 과정에서 생사와 직결된 위험에 직면한다. 이에 선언문에 저널리즘의 의무와 보호를 담은 내용을 마지막 권고사항으로 포함시켰다.

방송사업자들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 a. 특히, 언론의 자유와 같은 저널리즘의 가치를 옹호하고 보호한다. 언론의 자유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과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b. 폭력적인 분쟁 및 사후 처리과정에서 신뢰할만한, 균형잡힌, 신빙성있는 정보의 보도 및 확산을 보장한다. 교전 지역, 원조, 사람들의 신뢰 획득에 있어 이러한 사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들은 목표로 하는 시청자층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c. 직업상 윤리 기준 준수에 있어 취재기자들을 효과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분쟁 및 사후 처리 상황에서 훈련을 제공한다.<sup>34)</sup>
- d. 분쟁 및 개발 이슈에 대한 공동체의 이해와 참여, 의사결정이 개선되도록 투표로

33) 방송법 6조 ②, ⑤항

34) 2012 AMS에서는 동 조항과 관련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보와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삭제되었다. AIBD 연차총회 결과보고서 2012.

선출된 정부와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그리고 분석과 토론의 평화적 플랫폼으로서의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한다.

- e. 언론인의 안전에 대한 지식 및 자원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건설적인 협력의 방식을 추구한다.

관련 당국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였다.

- a. 국제적 표준 및 모범사례와 일치하는 명확한 미디어 정책을 도입한다.
- b. 대중이 뉴스 및 다른 형태의 공중통신에 접속하기 위해 방송신호나 인터넷 접속을 하는데 필요한 통신인프라를 개발한다.
- c.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는 다원적이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공영방송서비스를 개발한다.
- d. 합리적으로 안전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미디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을 건설하는데 있어 미디어의 핵심적 기여를 인정한다.

#### (6) 이행 및 미래 발전

한편, 10개 권고사항을 정리하면서, 선언문은 “2003 방콕 선언문+10”에 방송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관련성과 의미를 더욱 부여하고 권고안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와 관련당국이 협력하여 노력하도록 마지막 부분에 이행 및 미래 발전을 위한 동의사항을 정리하였다.

- a. 특히 조직내에 적용되는 권고안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동 선언문을 홍보한다.
- b. 이 문서에서 제시된 권고안 이행에 있어 모범사례를 추구한다.
- c. 지역 및 국제기구와 제휴협력하여 권고안을 홍보하고 운영한다. AIBD는 역내 세미나 및 국제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기에 앞서 이 선언문의 내용을 제기해야 한다.
- d. 효과적이고 관련성 높은 방송산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을 생산하고 다른 대응을 창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e. 지속적인 관련성의 보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 선언문을 검토한다.

이는 기존선언문이 AIBD의 의무를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선언문의 이행을 AIBD에만 국한하지 않고 회원국의 사업자, 정부를 포함한 관련당사자로 확대하여 더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부합한다.

〈표 3〉 2003 방콕선언문과 개정선언문 비교

구 분	2003 방콕선언문	개정선언문(2003 방콕선언문+10)
권고	전문, 권고 1~5	전문, 권고 1~10, 이행 및 미래발전
주체	2003 아태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대표단	2003 아태 정보통신방송 장관회의 대표단 + AMS 2012 대표단
권고대상	방송사, 정부당국	방송사, 관련당사자(정부당국 포함)
권고 세부내용	아태지역 방송사, 정부당국이 직면한 도전과제, 경험에 대한 논의 및 권고	2003년 이후 미디어 환경의 변화, AMS에서의 지난 논의 이슈를 반영한 권고

자료: AIBD(2003)(2012) 재구성

본문에서 정리, 분석한 2003 방콕선언문+10의 주요내용 및 개정, 추가된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개정 선언문에서는 10년간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의 확대를 고려하여,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을 추가하였고, 선언문이 적용되는 권고대상도 정부당국(authority)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된 당사자(concerned party)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동 선언문이 아직 역내에서 차지하는 의미 및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AIBD 및 AMS의 지속적 운영 및 성공이 예견된다면 선언문의 미래가치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정책적 시사점

본고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방송사업자, 정부당국 및 관련당사자가 미디어와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을 담고있는 2003 방콕선언문 및 개정본인 2003 방콕선언문+10의 내용을 분석, 비교하고 특징을 찾아보았다.

먼저 2003 방콕선언문의 태동 유래 및 배경과 그간 미디어 및 ICT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 및 경과를 통해 개정의 당위성과 흐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003 방콕선언문과 비교해볼 때 2003방콕선언문+10 즉 개정선언문이 가진 포괄성, 시의성, 정책적 관련성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기존 선언문의 경우 5개 권고사항을 통해 성안 당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던 분야의 발전 및 협력 도모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합의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10년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제논의 이슈를 반영하고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권고사항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AIBD 사무국이 회원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선언문 개정의 작업을 진행하여, 전체 10개 핵심 권고사항으로 완성되었다. 개정선언문에 새롭게 포함된 5개 추가 권고분야는 미디어의 책임시스템, 미디어와 환경, 소셜미디어, 여성의 권한 확대, 분쟁 및 체제전환 국가의 미디어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책, 법규 등의 현재 상황, 부합성을 점검해보았다. AIBD 및 선언문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하는 정책내용도 있었으며 아직 보완이 필요하거나 강화가 필요한 정책분야도 존재했다.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다양성 증진, 저작권 보호,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및 지원, 저소득층 지원,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체계 강화, 재난방송 의무 등에 있어 방송법 등 국내법규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콘텐츠 산업 육성, 디지털 잉여주파수 대역 활용, 방송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을 관련부처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소셜미디어 관련 법제화 및 재난방송 관련법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재난방송체계 개선을 위한 최적 시스템 보완 및 부처별로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잉여주파

수 대역의 균형적, 효율적인 활용 등 범규 및 정부 핵심과제에 명시된 내용도 실제 집행 및 이행에 있어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방콕선언문은 미디어가 직면한 주요문제 및 도전과제, 특히 개도국의 취약 부분 그리고 핵심이슈를 담고있는 균형있는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선언문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 문자 그대로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자는 권고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업자 및 관련 정부부처가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역내에서의 우리나라 방송의 위상, 선진 방송 기술 및 발전된 방송문화에 대한 개도국의 증가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국제논의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나아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최적 및 모범 정책사례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AIBD의 활동 및 방콕선언문의 내용은 주로 개도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견 우리나라 정책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해보인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방송분야의 유일한 정부간 회원제 국제기구의 특성상 향후 확대가능성, 활용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준회원은 최근 개도국의 경제적 사정으로 증가세는 줄었으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AMS 등 주요 회의 및 행사들이 정례화되어 참가국, 참가자가 늘어가고 있다.<sup>35)</sup> 현재는 AIBD 내에서 사무국장을 필두로 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만,<sup>36)</sup> 기구내 지분확보 및 위상제고를 위해,<sup>37)</sup> 우리나라는 AIBD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아태 방송시장 및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개도국과의 상호 이해 및 문화상대성 존중을 통해 우리 정부 및 방송사의 AIBD에의 기여를 증대하고, 발전된 ICT 및 방송 기술, 문화 선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5) AIBD 준회원은 2008년 75개, 2009년 88개, 2010년 98개, 2011년 86개, 2012년 75개이며, AMS는 '04년 350명, '05년 334명, '06년 442명, '07년 483명, '08년 501명, '10년 800여명, '11년 538명, '12년 698명이 참가. AIBD 연차총회 결과보고서.

36) 사무국장은 중국의 양비엔위안(楊濱源, 前 CRI 기자)이 2011년 부터, 전략기획팀 의장은 중국의 차오인(曹寅, SARFT 과장)이 10년이상 수행 중

37) 우리나라는 2009년 총회에서 AIBD 집행이사국에 선출되어 4년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AIBD 연차총회 결과보고서 2009~2012.

## 참고문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2013  
년도 업무보고”, 2013. 4.
- 방송통신위원회 (2009),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방송통신위원회 정  
책 2009-25, 2009. 11.
- \_\_\_\_\_ (2011), “스마트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2012년 방송통신 핵심  
과제”, 2011. 12.
- \_\_\_\_\_ (2012a), “모바일광개토플랜”, 2012. 1.
- \_\_\_\_\_ (2012b),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2012. 10.
- \_\_\_\_\_ (2013), “2013년도 업무계획”, 2013. 4.
- 이강규 (2009), “방송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  
정책 제21권 16호, 2009. 9.
- 이원태 외 (20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13-02, 2011. 12.
- 최재웅 (2012), “뉴미디어를 활용한 재난방송 전달체계 개선 연구”, 방송공학회지  
17권 3호, 2012. 7.
- 기자협회보, “조선, SNS 가이드라인 시행”, 2013. 3. 7일자.
- 디오데오, “쫓겨간 주파수정책 ‘모바일 광개토플랜’ 차질 우려, 2013. 3. 18일자.
- 온라인미디어뉴스, “연합뉴스, SNS가이드라인 제정”, 2010. 11. 16일자.
- PD저널, “통합방송법 규제 대상에 소셜미디어도 포함”, 2013. 5. 9일자.
- 국가정보화기본법, 2013. 3. 23.
- 방송법, 2013. 3. 23.
- 방송법 시행령, 2013. 3. 23.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013.  
3. 23.

AIBD 연차총회 결과보고서 2009~2012년.

AIBD 홈페이지 (www.aibd.org.my)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AIBD (2003). “BANGKOK DECLARATION 2003”, 2003.

\_\_\_\_\_ (2012). “BANGKOK DECLARATION 2003+10”, 2012.